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9회 충청북도의회
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6. 9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박용규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‘사회적경제기업’을 ‘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’으로 변경
(안 제1조)
-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‘사회적경제’란 소득양극화와 사회·경제적 불평 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‘따뜻한 사회’, ‘나눔경제’, ‘공유경제’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서, ▲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‘사회적기업’, ▲공동소유,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성조직인 ‘협동조합’, ▲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‘마을기업’, ▲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(자립)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‘자활기업’ 등을 중심으로 ‘상호간의 연대와 협력, 호혜의 부조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, 지역공동체 강화,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’를 추구하는 민간 경제활동을 의미함.

-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취지를 공감하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,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2019년 제정하여 시행¹⁾해 왔으나, 그 성과가 다소 저조²⁾한 상황임.

1) 2019년 ‘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’ 제정 이후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

○ 따라서,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·강화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 노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○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‘사회적경제기업’을 ‘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’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안 제8조에 기관의 장이 기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(서비스, 공사 포함)등을 구매할 경우,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사회적경제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사회적기업		사회적협동조합		계		비고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	
2019	5,003	1.64%	442	0.14%	5,445	1.78%	평균 2.60%
2020	5,136	2.03%	604	0.24%	5,740	2.27%	
2021	10,534	3.09%	1,093	0.32%	11,627	3.41%	
2022	11,168	2.65%	1,223	0.29%	12,391	2.94%	

2)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사회적기업		사회적협동조합		계		비고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	
2019	135,774	1.88	22,800	0.32	158,574	2.2%	평균 2.95%
2020	148,132	2.24	26,670	0.40	174,802	2.64%	
2021	204,212	2.83			240,868	3.34%	
2022	277,800	3.01			335,114	3.63%	

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제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우선구매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충청북도 교육기관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.
- 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추세이며,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·전남·광주·대전·울산 5개 지역에서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.
-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의 본 조례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며, 타 시도

교육청의 모범 사례가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< 시도 및 시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비율 관련 조례 제정현황 >

구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교육청					5%	1%	4%		5%					5%			
지자체	5%	5%			5%	3%		3%			5%		5%	5%		5%	

- 또한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
- 다만,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되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 및 구매 후 제품 관리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시, 우선 구매에서 제외하는 등과 같은 우선 구매 예외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담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,
-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구매 비율 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사무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